



캘리포니아 법은 직장 내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부 (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해 또는 그렇게 간주됨으로써 고용시 받게 되는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상
- 연령 (40세 이상)
- 피부색
- 장애 (HIV 및 AIDS 를 포함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
- 유전자 정보
-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 결혼 여부
- 건강 상태 (유전적 특징, 암 또는 암 관련 기록 또는 병력)
- 군인 및 참전 신분
- 국적 (언어 사용 및 연방법이 인정하는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인종
- 종교 (종교적 의복 및 차림새 포함)
- 성별 (임신, 출산, 수유 및/또는 관련 건강 상태 포함)
- 성적 취향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정부 법령 섹션 12900 에서 12996까지) 및 관련 시행령 (캘리포니아 법령, 타이틀 2, 섹션 11000 에서 11141까지):

- ① 직원, 신청자, 무급 인턴, 자원 봉사자 및 독립적인 계약자에 대한 어느 누구의 괴롭힘도 금지하며 고용자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성적 괴롭힘, 성별에 관한 괴롭힘, 임신, 출산, 수유 및/또는 관련 건강 상태와 관련된 괴롭힘 뿐만 아니라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다른 종류의 괴롭힘에 대한 금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② 모든 고용자는 직원 각 개인에게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 불법성 및 법적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자는 캘리포니아 정부령 섹션 12950 에 나타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발행물을 직접 출판하거나, 또는 DFEH 안내 책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③ 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고용주 및 공공 단체는 성별 인식, 성별 표현 및 성적 지향에 근거한 희롱을 포함한 성희롱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④ 고용자는 사업장에서 꼭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언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자는 직원에게 언어 사용의 제한 그리고 이를 위반시의 결과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자는 지원자나 직원을 소지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이 미 연방법에 의해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⑤ 고용자는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부로서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종교적 의복, 장신구, 그리고 머리 모양, 얼굴이나 몸의 모발 등을 포함하여, 직원, 무급 인턴 또는 지원자의 종교적 신념 및 관습 등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⑥ 고용자는 장애를 가진 직원이나 지원자가 일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⑦ 지원자, 무급 인턴, 자원 봉사자 및 직원은 법이 요구하는 동등한 고용을 행하지 않은 고용자, 직업 소개소 또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DFEH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⑧ 어떠한 지원자, 무급 인턴, 또는 직원도 채용, 진급, 일의 배정, 해고, 또는 고용의 기간, 조건, 또는 특권에 있어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⑨ 직원, 직업 소개소 및 노동 조합은 지원서, 인사 기록, 그리고 고용 추천 기록을 최소 2년 동안은 보관해야 합니다.
- ⑩ 고용자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건강상의 조건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고용인에게 4개월 이하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⑪ 고용자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된 건강상의 상태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조언에 의해 고용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수용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⑫ 직원이 20인 이상인 고용주는 요건이 되는 직원들에게 출산을 위해 또는 입양이나 위탁 자녀의 배치를 위해 12개월의 기간 중 12주 이하의 휴가를 허락하여야 하며; 또한 직원이 50인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 개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우, 또는 건강 상태가 심각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하여 12개월의 기간 동안 12주 이하의 휴가를 허락해야 합니다.

- ⑬ 직업 소개소는 모든 지원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적인 고용 요청은 거절하여야 하며,
- ⑭ 고용자나 직업 소개소가 고용전 차별적인 질문을 행하거나 차별적인 고용 선호도를 나타내는 구인 광고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노동 조합은 회원 가입이나 회원을 일에 파견할 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⑮ 불법적인 차별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을 반대하거나, 보고하거나 도와 주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불만 제기

법은 직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개인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에는 고용, 선불, 후불, 승진, 복직, 정지 명령, 전문가 증인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비 및 관련 비용, 가혹 피해 보상 및 감정적인 피해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자, 무급 인턴 및 고용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믿는다면, DFEH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계약자 및 자원 봉사자: 괴롭힘을 당했다고 믿는다면, DFEH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차별/괴롭힘이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의 경우, 18세 생일을 맞은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서면 접수 양식을 온라인, 일반 메일, 또는 이메일 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DFEH에서는 접수 양식을 전화로 받아 적음으로써 접수 양식 제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난청 또는 청각 장애가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711)를 통해서, 또는 귀하의 VRS를 통해 (800) 884-1684 (음성) 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원하시는 경우, 커뮤니케이션 센터 (800) 884-1684 (음성 또는 릴레이 오퍼레이터 711을 통해) 또는 (800) 700-2320 (TTY) 로 전화 하시거나 이메일 contact.center@dfeh.ca.gov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DFEH는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다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른 방법이나 웹페이지로 접근하고 싶으신 경우, DFEH 연락처인 (800) 884-1684 (음성 또는 릴레이 오퍼레이터 711을 통해), TTY (800) 700-2320, 또는 center@dfeh.ca.gov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정 고용 및 주택부

수신자 부담 전화
(800) 884-1684
TTY: (800) 700-2320
온라인 www.dfeh.ca.gov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령 섹션 12950 및 캘리포니아 시행령 타이틀 2, 섹션 11013은 모든 고용자는 이 자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용 사무실, 직원 게시판, 직업 소개소 대기실, 노동 조합 회관 및 기타 직원들이 모이는 곳에 눈에 잘 띄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고용자는 어떠한 시설이나 기관의 직원의 1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를 적합한 언어로써 고지해야 합니다.